

대전지방법원 2023. 1. 11 선고 2022가단13523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2. 14.

판 결 선 고 2023. 1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2,358,689원 및 그 중 38,930,369원에 대하여 2022. 8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.9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1~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19. 4. 30.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

C(이하 'C'라 한다)가 8,000만 원 상당의 식품가공기계를 구매함에 있어 할부이자 연 11.9%, 연체이자 연 14.9%, 할부기간 36개월, 월 할부금 2,651,320원으로 정하여 할부금융을 제공하였고,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할부금융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C는 2020. 9. 15.부터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, 2022. 8. 11. 기준으로 위 할부원리금은 원금 38,930,369원, 이자 2,037,340원, 지연배상금 11,390,980원, 합계 52,358,6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52,358,689원 및 그 중 원금 38,930,369원에 대하여 2022. 8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4.9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준호